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30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51,323,0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23,0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와 1989. 12. 11. 혼인하였다가 2019. 10. 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2.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 C의 이혼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8. 2. 기준 129,627,89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이혼 신고일인 2019. 10. 8. 기준 C는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액이 257,5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C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57,500,000원에서 당시의 근저당권채무액 154,853,965원을 차감한 102,646,035원 중 C의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51,323,017원(= 102,646,035원 ÷ 2)의 범위 내에서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수익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3.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6. 12. 말소되었다. 또한 2014. 10. 22.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2016. 2. 29. ‘채권최고액 103,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이자 등은 모두 피고가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C가 분양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특히, C가 2016. 8. 3. 및 2019. 8. 19. 피고에게 ‘본인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을 제5호증), C가 외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 피고 및 피고의 자녀 F가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의 이혼과정에서 C의 귀책사유가 상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C가 재산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성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의 1필지 [도로명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식구조 경사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8층 84.8358㎡

대지권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북구 대 17459㎡2. 광주광역시 북구 대 74㎡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7533분의 42.507

끝.

